

송파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송파복지센터는 노인의 건강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주도적인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실천적 돌봄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노인들에게 평생학습과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건강복지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해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운영방침)

1. 회원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회원들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여 돌봄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3. 회원의 소속감과 연대감 고취를 통해 노년기의 사회적 소외와 편견을 극복하고 육체적·사회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회원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5. 교육 프로그램은 담당 사회복지사 및 해당분야 강사를 두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3조 (개관)

개관일은 주5일(월~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주중 09:00~18:00으로 한다.

제4조 (휴관)

휴관일은 일요일, 법정 공휴일, 임시휴관은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한다.

제2장 프로그램 관리

제5조 (프로그램)

노인들이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복지, 교육문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1. 노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2.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해 나갈 능력을 향상시키며
3.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보람 있는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건강복지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② 교육문화 : 노인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지원

제6조 (회원자격)

회원 가입은 상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송파구민이 아닌 경우, 육아, 가족돌봄, 직장이 송파구에 있는 경우 실거주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분기구성)

1. 건강복지·교육문화 프로그램은 3개월로 단위로 하며 연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건강복지 프로그램 중 몸짱교실은 1개월 상시등록이 가능하다.)
2. 최소 1주 이상을 다음 분기 준비기간으로 한다.

제8조 (교과편성)

1. 모든 프로그램은 정해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며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2. 프로그램, 기간, 정원은 복지센터 사정 및 회원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프로그램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60분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 장소는 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프로그램별 시간을 조정하여 혼잡을 방지하도록 한다.
 - 가. B1층 : 강당
 - 나. 2층 : 프로그램실 1실, 다목적실, 컴퓨터실, 몸짱교실, 건강교실
5. 프로그램 접수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동일 반을 개설할

수 있다.

6. 기관의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 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7. 기관은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 분기 개강 1개월 전 다음 분기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공지한다.

제9조 (특강 및 공개프로그램)

송파복지센터는 필요에 따라 특강 및 공개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 (폐강)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센터장의 재가 하에 폐강할 수 있다.

1.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2. 강사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11조 (휴강)

휴강은 각 항의 사유에 적합할 때 담당 직원이 판단하고 부서장의 결정에 의해 할 수 있다.

1. 강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경우
2. 복지센터의 주요 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수강신청 및 제한)

1. 수강 신청은 본인 확인 후 수강 등록한다.
2. 매분기 전월 1일부터 2주간 기존회원이 우선등록을 하고, 둘째 주부터 선착순 접수를 한다. 정원 미달될 경우 마감 시까지 추가 선착순 접수를 실시한다.
3. 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의 중복 등록은 제한한다.

제13조 (수강료 납부 및 감면)

1. 프로그램 수강료는 3개월 기준으로 몸짱교실 100,000원, 교육문화, 건강복지 30,000원~70,000원(만60세 이상 50% 할인) 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의 특성 (재료비 및 강사료 등)에 따라 수강료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3. 납입한 수강료는 복지센터 및 수강자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4.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00%)
 - ② 만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50%감면)

- ③ 센터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④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노인

제14조 (수강료 환불)

1.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한다.
 - 가. 개강 전 : 수강료 전액 환급
 - 나. 총 강좌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개시 월 1일부터 적용)
 - 다. 총 강좌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라. 총 강좌기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2. 환불 신청시 영수증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결제카드 및 카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3. 환불신청서 미제출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4. 환불계좌가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5.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금액을 지급한다.

제3장 관리

제15조 (회원 모집 및 자격)

1. 모든 프로그램은 분기별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몸짱교실은 1개월 상시모집이 가능하다.)
2. 정원 미달 프로그램에 한하여 추가 접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3. 건강복지·교육문화 프로그램 등록 자격은 본 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제16조 (회원 모집) 송파복지센터는 3개월 과정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제17조 (충원, 출석관리)

1. 강사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반드시 출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정원 미달 프로그램의 경우 추가 접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3. 정원 초과시 대기등록 후 결원발생시, 순번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강사 모집공고)

건강복지·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공고는 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3곳 이상(워크넷, 복지넷 등 공신력 있는 인력사이트)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제19조 (강사 응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응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격증(국가·민간 모두 포함) 및 수료증 소지자
2. 관련학과 이수·졸업한 자
3. 노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시설 강의 경험자 우대
5. 관련서류 : 이력서, 강의계획서, 학위증명서, 경력/자격/수료/수상경력 등의 증빙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제20조 (강사채용)

1. 최종 강사로 채용된 경우, 강의계획서와 강사의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간을 확정한다.
2.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복지센터 보관, 1부는 강사가 보관한다.
3. 활동 시작 전 강의 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사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물품 판매, 수강생 신상정보누출, 소개 및 권유, 금품수수, 정치활동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5. 강사의 교체는 해당 프로그램의 휴강 횟수가 연 8회 이상, 해당 프로그램 정원 2/3 이상의 회원이 강사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6. 기타 강사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강사관리 운영지침에 의거한다.

제21조 (담당 직원)

1. 회원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진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회원에게 맞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강사 및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4. 담당 사회복지사는 출석부의 출결사항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4장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제22조 (내용 및 방법)

1. 회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
2. 회원의 일반사항, 프로그램 내용(시간, 횟수, 장소, 방식 등), 프로그램 강사의 진행, 전반적 만족도, 기타 욕구사항 등을 타당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한다.
3. 설문조사 외 간담회, 인터뷰(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23조(내용 및 방법)

만족도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차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며 그 결과물을 기록,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기 지침은 송파복지센터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해석의 다툼이 있을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센터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개정)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센터 교육문화 담당자가 개정안을 기안하여 센터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여 개정된다.